

성매매 피해자 권리 안내



● ● ● **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**

① 성매매 피해자*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습니다.

* <성인>

- ▶ 위계, 위력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
- ▶ 업무관계, 고용관계,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
- ▶ 청소년,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·유인된 사람
- ▶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

<아동·청소년>

- ▶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했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

②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-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타 기관(진단서, 감정서 등)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·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모든 피해자는 조사받을 때,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동거인·고용주·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.

④ (외국인 여성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우) 수사가 끝날 때까지 「출입국관리법」상 강제퇴거 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이 유예되며, 「소송촉진법」상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⑤ (아동·청소년 피해자의 경우) △ 국선변호사 선정 △ 진술영상 녹화 및 속기록 작성 △ 증거보전 청구 △ (13세 미만·장애인)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● ● ● **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**

①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동성 경찰관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성매매 알선자 등과의 채권 계약은 무효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.

국민비서 홈페이지(www.chatbot.ips.go.kr)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,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

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



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피해회복 지 원

- ①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,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, 피해자 조사,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(☎1366)에서 24시간 긴급 전화상담, 초기 상담,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각 지역의 쉼터·병원·법률기관·정부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- ③ 지역별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, 의료·법률 지원, 지원시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⑤ 다누리콜센터(☎1577-1366)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, 쉼터 입소 및 의료·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⑥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1644-7077)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⑦ 범죄피해자지원센터(☎1577-1295)에서 생계비, 치료비, 취업 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청소년 지 원

- ① 지역별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 보호시설, 상담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청소년 피해자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(☎1388)에서 전화·문자·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립·자활 지 원

- ① 성매매피해상담소,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성매매 관련 질병치료에 대한 의료비용이 지원되며, 본인 및 가족의 취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